

대부(중개)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

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(중개)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해, 등록을 취소하고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1. 공 고 명 : 대부(중개)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
2. 등록취소일자 : 2023. 11. 27.
3. 공 고 기 간 : 2023. 11. 27. ~ 2023. 12. 12. (16일간)
4. 공 고 방 법 :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5. 등록취소 업체

구분	등록번호	상호	대표자	소재지	등록취소일
대부업	2020-인천서구-0016	티더블유평론 대부주식회사	안O웅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51, 청라 에일린의 뜰 1층 117호	2023.11.27
대부업/ 대부중개업	2021-인천서구-0010 2021-인천서구-0011	제이파이낸셜 대부/대부중개	위O연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82, 광영스너그시티청라313호	2023.11.27
대부업	2021-인천서구-0018	SPEED24 대부	김O수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88번길 26, 102동 232호	2023.11.27
대부업	2021-인천서구-0025	리더스대부업	나O섭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876, 2층	2023.11.27
대부중개업	2023-인천서구-0004	무조건당일 대부중개	김O솔	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2번길 34, 102호	2023.11.27

6. 처분의 이유 : 우리 구 등록 대부(중개)업체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(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-2057호, 공고기간 : 2023. 10. 4. ~ 2023. 11. 7)를 하였으나,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소재확인 통지가 없어 소재확인이 되지 않으므로, 등록을 취소함.
7. 근거법령 :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
8. 처분내용 : 대부(중개)업 등록취소 ▶향후 5년간 대부(중개)업 등록 제한
9. 구제절차 : 상기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상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상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정책과(☎ 032-560-3266)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11. 2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